

의안번호	2206509
의 퇴 인	여기구의원
회 답 일	2024.1.13
추 계 번호	24B5915

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재·부재의 생산, 공급 및 보관과 이에 따라 발생하는 탄소발자국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기 위한 연구용역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2026년 1억 4,900만원 등 향후 5년 동안 총 1억 4,900만원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
건설자재·부재의 품질 확보 등	149	-	-	-	-	149

주: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유사사업을 바탕으로 추산한 사항으로, 향후 정부의 사업계획안이 확정될 경우 추계액은 달라질 수 있음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57조 (건설자재·부재의 품질 확보 등)	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재·부재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설자재·부재의 생산, 공급(자재공급원 승인 및 그 승인의 취소 등을 포함한다) 및 보관과 이에 따라 발생하는 탄소발자국(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2조제16호 ¹⁾ 에 따른 탄소발자국을 말한다)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음(제1항)	재량규정

1) 안 제2조(정의)

16. “탄소발자국”이란 제품 및 서비스의 원료채취, 생산, 수송·유통, 사용, 폐기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적으로 나타낸 지표를 말한다.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
1	안 제57조 (건설자재·부재의 품질 확보 등)	○	(추계)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사업비를 추산함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에 따른 탄소발자국 고시를 위해 필요한 사업계획안이 부재하므로, 유사사업을 참고하여 사업비를 추산함
-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재·부재의 생산, 공급에 따라 발생하는 탄소발자국 등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는 경우, 연구용역 사업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
 - 탄소발자국 고시에 필요한 건설자재·부재 등이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, 구체적 사업계획안이 부재하므로, 유사사례의 평균 사업비 수준이 소요될 것으로 가정함
 - 탄소발자국 산정과 관련하여 최근 수립된 정부부처, 공공기관 등의 사업비 평균은 1억 4,900만원으로, 추계기간 동안 1회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가정함

[표 2] 유사연구용역 사업 현황

(단위: 백만원)

사업명	발주기관	사업년도	사업비
생태산업개발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및 제품 탄소발자국 산정 연구	한국생산기술연구원	2024	250
중소·중견기업 제품의 환경성적(탄소발자국) 산정 지원 용역	한국환경산업기술원	2017	252
목재 및 목제품의 탄소저장표시제도 도입 방안 연구	산림청	2017	45
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탄소발자국 측정 정책연구	문화체육관광부	2023	50
평균			149

자료: 조달청 나라장터, 정책연구관리시스템(PRISM)

- 개정안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재·부재의 생산, 공급 및 보관과 이에 따라 발생하는 탄소발자국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기 위한 연구용역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2026년 1억 4,900만원 등 향후 5년 동안 총 1억 4,900만원으로 추계됨

[표 3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
탄소발자국 고시 연구용역 사업	149	—	—	—	—	149

주: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유사사업을 바탕으로 추산한 사항으로, 향후 정부의 사업계획안이 확정될 경우 추계액은 달라질 수 있음

IV. 부대의견

-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유사사업을 바탕으로 추산한 사항으로, 향후 정부의 사업계획안이 확정될 경우 추계액은 달라질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과장	분석관
경제비용추계과	배아형	문지은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문지은	02-6788-4645	mtsophia@assembly.go.kr